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고 제2026-6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사용검사 단계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결과 확인과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층간소음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및 목적 정비(안 제명 및 제1조)

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및 사업주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 확인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3. 입법예고기간: 2026. 11. 11. ~ 2026. 11. 17.(7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사무국 의사팀(전화: 2147-3662, FAX: 2147-3956, e-mail: khjjj@songpa.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www.council.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